

9. 제1회 월례발표문

18~19세기 여성관련 범죄의 양상과 국가의 인식

유승희(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머리말

1. 형률에 나타난 형사법상의 불평등
 - 1) 良賤 및 奴主 관계
 - 2) 가족 및 친속관계
 - 3) 夫妻 및 妻妾관계
2. 여성관련 범죄의 실태와 특징
3. 여성관련 범죄의 양상
 - 1) 가정 내 범죄와 폭력
 - 2) 성적 욕망사이에서의 갈등: 여성의 성과 범죄
 - 3) 가정 밖 여성 폭력의 양상과 갈등
4. 여성범죄인의 처벌과 인식
 - 1) 여성의 타인 살해에 대한 국가의 처벌
 - 2) 가정 내 여성범죄의 처벌과 인식

맺음말

머리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여성관련 범죄에 주목하였다. 여성관련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국가와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과 균열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內外法이나 삼강오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유교적 여성관에는 남녀의 구별이나 차별의 윤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별 및 구별이 실제 범죄 및 처벌과정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여성 관련 범죄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19세기 여성범죄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여성 범죄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법상 남성과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성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 어떻게 순응하며 일탈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여성범죄인의 처벌에 과도하게 성적 특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는지 등 형사법상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여성관련 범죄의 특징과 인식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형률에 나타난 형사법상의 불평등

조선은 『經國大典』 刑典 用律條에 규정된 것처럼 중국의 『대명률』 형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였다. 『대명률』에 나타난 형사법상의 불평등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구현되었으며, 남녀 간의 성은 형사법상의 불평등을 만드는 요소인가를 『대명률』 형률 가운데 殺傷사건의 처벌 법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良賤 및 奴主 관계

먼저 良賤의 신분이나 主從 관계인 노주간 살상사건에 대한 형사법 상의 차별이다. 『대명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계의 사람끼리 상호 폭력을 휘둘렀을 때 처벌 기준은 때린 수단, 즉 손이나 발로 때렸느냐, 다른 물건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달랐다. 또한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신분, 주종, 친족관계의 親疎 등 폭행 대상에 따라서도 처벌의 輕重이 달랐다.

<표 1>은 양천 및 노주간에 발생한 구타 및 살인 행위에 관한 형법상의 규정으로 형량이 가장 낮은 구타행위와 가장 높은 살인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양천 및 노주관계의 殺傷행위에서의 형사법상 처벌

행위	관계	형률			
		태10	태20	태30	
구타	凡人		손이나 발로 사람을 구타하였으되, 다치지 않은 경우		
	良賤	양인이 손이나 발로 타인의 노비를 구타하였으되, 다치지 않은 경우		노비가 양인을 손이나 발로 사람을 구타하였으되, 다치지 않은 경우	
	奴主	家長이 예전 노비를 손이나 발로 구타하였으되, 다치지 않은 경우		노비가 옛 가장을 손이나 발로 구타하였으되, 다치지 않은 경우	
		장60 도1년	교형	참형	능지처사
살인	良賤		양인이 노비를 구타치사 하거나 고살한 경우	노비가 양인을 구타하여 죽게 한 경우	
	奴主		가장, 가장의 기친·외조부모가 고공인을 고살한 경우		노비 및 고공인이 가장, 가장의 기친, 외조부모를 모살하거나 고살한 경우
		가장, 가장의 기친, 외조부모가 노비를 구타하여 죽게 한 경우		노비가 가장을 구타한 경우	노비가 가장을 구타하여 죽게 한 경우

<전거> 『增補文獻備考』 卷136, 刑考10, 諸律類記

폭력범죄에서 형량이 낮은 행위는 일반 사람이 ‘손이나 발로 사람을 구타하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이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는 태20의 형벌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에도 가해자의 신분, 주종관계에 따라 형량은 상이하였다. 양인이 타인의 노비를 구타했지만 다치지 않았을 경우 태10의 처벌을 받아 일반인이 행한 것보다 감형된 반면, 노비가 양인을 구타했을 경우는 태30의 형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行刑의 법칙은 노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家長이 예전 노비를 구타했을 경우 태10의 형벌로 감형된 것에 비해, 노비가 옛 가장을 구타할 경우는 태30으로 가형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천간의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비가 양인을 때리면 일반인보다 1등급을 더했으며, 양인이 노비를 구타할 경우 1등급을 감하여 처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살인 행위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양천간 살상사건에서 양인이 노비를 구타하여 죽였거나 고의로 살해했을 때에는 교형에 처한 반면, 노비가 양인을 구타하여 죽게 한 경우는 1등급을 더해 참형에 처하였다. 노주간 발생한 살인행위에서는 가장 및 가장의 期親 또는 외조부모가 죄 없는 노비를 구타해서 죽였을 때에는 장60 도1년의 형벌에 처한데 비해, 노비가 가장을 구타할 경우는 참형, 사망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되어 능지처사의 형벌에 처했다. 또한 가장이 고공을 때려서 죽게 한 경우는 장100 도3년에 처해진 반면, 고공이 가장을 때려서 죽일 경우 참형에 처하였다. 이것이 鬪毆殺이 아닌 고의적인 살해인 故殺일 경우는 가중 처벌되어 능지처사의 형벌을 받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범행일지라도 노비와 고공인의 처벌이 달랐다는 점이다. 형률에 따르면 가장이 고공을 죽였을 경우 노비보다 2등급 정도 加刑하였으며, 반대로 노비가 가장을 구타했을 때와 고공이 가장을 구타해서 죽게 한 경우는 모두 참형으로 형벌이 동일하였다. 이는 노비와 가장, 고공인과 가장 당사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공이나 노비가 가장의 친속을 구타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공이 가장의 大功親을 구타한 경우 장100에 처한 반면, 노비가 했을 때에는 도2년에 처하였다. 또한 고공이 가장 또는 가장의 기친, 외조부모를 구타한 경우는 도3년에 처한 반면, 노비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교형에 처하였다.

이처럼 양천 및 노주관계는 형법상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형률의 차이는 양천보다 노주관계에서 더욱 심하였다. 노주간에서도 고공인과 주인의 관계보다는 노비와 주인간의 형법상 불평등은 극심했다. 이러한 양상은 양천의 명분과 노주의 명분이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명률』에 따르면 “노비나 고공인이 가장이나 가장의 기친, 외조부모, 시마 이상의 친척을 죽이려고 모의하면 그 죄는 아들이나 손자가 행한 것과 같다”고 하여 노비나 고공의 가장 및 가장의 친척에 대한 범죄를 자손이 부모 및 웃어른에게 저지른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 노주의 명분이 부자의 명분을 따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양천보다 노주간 범죄행위에서 형사 처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 가족 및 친속관계

1) 구덕회,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차별」, 『역사와 현실』65, 2007, 63쪽.

가족 및 친속관계에 있어서 먼저父子간의 범죄행위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져야 하는 효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는 일반 범죄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처벌하였다. 『대명률』에는 부모가 자손이 敎令을 범하여 구타하여 죽였을 경우는 장100에 처하였으며, 고의로 살해했을 때에는 장60 도1년에 처하였다.²⁾ 이러한 『대명률』의 형벌은 조선후기 『속대전』에 이르면 자식을 죽이는 악행을 징계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 자에게 교형을 부과하였다.³⁾

한편, 자식이 부모를 구타했을 경우는 참형에 처했고, 살해했을 경우는 능지처사에 처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살인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범죄인의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범죄인의 집을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었다. 또한 국가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읍호를 낮추고 해당 수령도 파직하는 등⁴⁾ 일반 살인과 다르다는 것을 법규로 보여 주었다.

형제나 친속일 경우 <표 2>에 따르면 同姓의 服이 없는 尊長이 卑幼를 구타하면 태 10에 처한 반면, 同姓의 복이 없는 비유가 존장을 구타하면 태 30의 형벌을 받았다. 이는 형제간에도 동일하였다. 동생이나 누이동생이 형의 아내를 구타하면 태 10에 처한 반면, 형이나 누이가 동생의 아내를 구타하면 태 30의 형벌을 받았다.

<표 2> 가족 및 친속관계의 殺傷행위에서의 형사법상 처벌

관계	형률	
	태10	태30
兄弟 및 親屬	.同姓의 服이 없는 尊長이 卑幼를 구타하 되, 다치지 않은 경우 .형이나 누이가 동생의 처를 구타하되, 다 치지 않은 경우	.同姓의 복이 없는 卑幼가 존장을 구타하 되, 다치지 않은 경우 .동생이나 누이동생이 형의 처를 구타하되, 다치지 않은 경우
父子	교형	능지처사
	부모가 자녀를 죽인 경우	조부모·부모를 때려죽인 경우 조부모·부모, 존장, 외조부모를 모살한 경우

<전거> 『增補文獻備考』 卷136, 刑考10, 諸律類記

3) 夫妻 및 妻妾관계

<표 3>은 부처 및 처첩간 살상행위에 대한 형률조항이다.

2) 『大明律』 刑律, 鬪毆, 毆祖父母父母條.

3) 『增補文獻備考』 卷136, 刑考10, 諸律類記.

4) 『續大典』 刑典, 推斷條.

<표 3> 부처 및 처첩관계의 殺傷행위에서의 형사법상 처벌

행위	형률		
	장80	장100	장60 도1년
구타	.남편이 처를 구타한 경우	.처가 남편을 구타한 경우	.첩이 남편을 구타한 경우
	.처가 첩을 구타하여 한 개의 치아를 부러뜨린 경우		.첩이 正妻를 구타한 경우
살인	교형	참형	능지처사
	.남편이 처를 때려서 죽게 한 경우	.처첩이 남편을 때려서 죽게 한 경우	.처첩이 남편을 고살한 경우 .처첩이 남과 간통하고서 함께 궤하여 親夫를 죽인 경우
		.남편이 처의 부모를 때려서 죽게 한 경우	.처첩이 남편의 조부모·부모를 때려죽인 경우

<전거> 『增補文獻備考』 卷136, 刑考10, 諸律類記

먼저 부부간 살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경우 장형 80대에 처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해죄보다 2등급을 감한 것이었다. 첩을 구타했을 때에는 아내를 구타한 죄에서 2등을 감하였는데, 이 두 경우 모두는 뼈가 부러지는 증상이 있을 때에 한정된 것이다. 이에 반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면 장형 100대에 처해 일반인의 상해죄보다 3등급을 가중했으며,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이를 허락하였다. 첩이 남편을 구타했을 때에는 정처가 행한 것보다 1등이 가중 처벌되어 도1년에 처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경우 일반인보다 2등급이 감형된 반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할 경우 3등급이 가형되어 동일한 구타행위에 있어서 5등급의 형벌의 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행위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죽게 한 경우는 교형에 처했으며, 아내가 남편을 때려서 죽게 한 경우는 참형에 처하였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고살이나 모살일 경우는 능지처사에 처하였다.

처첩간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처가 첩을 구타하면 장형 80대의 형을 받은 반면, 첩이 정처를 구타했을 때에는 도1년의 형을 받았다. 만약 첩이 처를 구타하여 절상 이상의 상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는 일반인의 상해보다 4등을 더해 처벌하였다. 이로써 보면 부처간과 처첩간의 질서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한 행동에 대한 처벌과 처가 첩에게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동일했던 것이다. 처첩간의 명분이 부처의 명분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나 처첩간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상의 불평등이 남편의 인척관계로까지 확대되어 적용

5) 이러한 처첩간의 질서는 법전에서는 국가와 남편과의 관계, 처첩이 남편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소유권에 관계된 경우, 남편의 부모 등 존장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처첩으로 묶여서 논의되고 있으나, 남편의 구타, 처첩의 자녀를 둘러싼 관계, 처의 권한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는 처첩이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즉 처첩과 갈등이 빚어진 상태가 누구인가에 따라 처벌은 세밀한 차이를 보였다(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2009).

된 것은 아니었다. 처첩이 남편의 백부모, 숙부모 또는 고모, 외조부모를 때린 경우와 일반인이 자신의 형, 자, 백부모, 숙부모, 고모, 외조부모를 때린 경우는 도형 3년으로 같았으며, 처첩이 과실로 지아비의 형·자, 백부모, 숙부모, 고모, 외조부모를 다치게 하거나 절상한 경우와 일반인이 행한 경우 또한 도 2년 반의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였다.⁶⁾ 그러므로 처첩과 남편의 친숙간에 발생한 범행과 일반인이 자신의 친속 사이에 행한 것에 대한 형사법제상 처벌이 동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 및 처첩관계의 살상행위에서 형사법제의 불평등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편이 처첩에게 행한 구타 등의 폭행은 일반인이 행한 행동보다 2등이 감해서 처벌된 반면, 처첩의 경우 같은 행위일지라도 남편이 행한 것보다 3등의 가중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처와 첩 사이의 폭력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형사법상의 불평등한 형률 적용이 처첩과 남편의 인척관계로 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었고, 아내와 남편의 부처관계, 정처와 첩 당사자들로 한정해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계층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윤리덕목인 삼강오륜을 강조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도덕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강이 종적인 질서라면 오륜은 인간과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인륜을 규정한 것으로 횡적인 질서를 의도하였다.⁷⁾ 즉 국가는 삼강오륜을 통해 상하의 명분과 계층을 설정함으로써 인간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도덕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족’을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강조하였다. 유교의 가족윤리는 개인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자유친, 부부유별은 이러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개별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의 규범적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⁸⁾

이러한 유교의 명분은 조선시대 형률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노주의 명분은 부자의 명분을 따랐으며, 남편과 처첩의 명분 또한 부부간의 의리에 따른 것이지만 부자의 관계와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처첩과 남편 친속 사이의 범행은 응당 복제에 따른 존장, 비유 사이의 범행을 처벌하는 법에 따랐다. 그러므로 『대명률』의 형사법제는 부부, 부자, 노주, 처첩, 양친의 사회 및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같은 유교적 질서의식(도덕질서)이 형률의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대명률』 형률에는 남편과 아내의 성차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이 나올 뿐 노주나 가족관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차에 따른 차별적 형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각자의 역할, 즉 상하, 존비, 귀천의 준별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규범을 법에 기록하여 법규화 하였고, 유교적 질서의식을 구분해 주는 양친, 노주, 부처, 부자 등 양자사이의 규범적 사회관계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이 내재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양친, 노주, 부처(첩), 가족 등 사회관계 안에서의 유교적 주종 관계가 조선시대 형사법상의 불평등을 유도하고 있었

6) 『增補文獻備考』 卷136, 刑考10, 諸律類記.

7) 강봉수, 「삼강오륜 「행실도」 유서에 함의된 전통 도덕교육의 방법과 원리」, 『윤리연구』46, 2001, 8~9쪽.

8) 최영진,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주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문, 2005.

던 것이다.

2. 여성관련 범죄의 실태와 특징

이 글에서 파악한 여성 관련 범죄의 실태는 『추조결옥록』의 범죄기록에 한정하였다. 『추조결옥록』은 1822년(순조22)부터 1893년(고종30)까지 형조에서 결옥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순조대는 1822년(순조22), 1830년(순조30), 1834년(순조34) 3년의 기록이, 헌종대는 1843년(헌종9)과 1845년(헌종11) 2년의 기록만이 남아있다. 이에 반해 철종대에는 1850년(철종1)과 1851년(철종2)을 제외한 1852년(철종3)부터 1863년(철종14)까지 12년간 형조에서 결옥한 사건들이 서술되어 이 시기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계열성을 찾을 수 있다. 고종대에는 1867년(고종4), 1872년(고종9), 1876년(고종13), 1886년(고종23), 1887년(고종24)의 기록이 결락되어 있다. 또한 다른 시기와 달리 형조의 심리옥안과 각 도 관찰사의 녹계안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고종대의 경우 형조의 심리안이 25년간 392건으로 평균 15.7건이 기록된 것에 반해, 철종대 12년간 1,023건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조의 심리안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자료의 시계열성도 가지고 있는 철종대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범죄를 살펴보려고 한다. 철종대 『추조결옥록』에 나타난 여성관련 범죄는 총 77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된 경우는 12건이며, 피해자인 경우는 65건이다. 『추조결옥록』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망원인은 크게 찌르다(刺), 때리다(打), 차다(踢), 부딪히다(觸), 너머치다(築), 누르다(扼), 물에 빠지다(溺) 등으로 폭력의 형태를 기재하며, 이를 다시 폭력 도구가 타물인지 아니면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인지에 따라 刃刺, 足踢, 毆打, 手打, 跨築, 手擠, 拳撞, 膝觸, 拳觸 등으로 기록하였다. 자살의 경우는 自刎, 自縊, 服瀾 등 자살 방식을 기재하였다.

9) 고종대의 살육심리안의 경우 헌종, 철종대와 달리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재되는 경향이 있다. 헌종, 철종 대의 경우 형조의 심리안은 살인이 발생한 각 도의 관찰사가 계본을 올리면 바로 그 달이나 다음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고종대의 경우는 각 도 관찰사의 살육죄인 녹계안이 1874년(고종11) 138건, 1883년(고종20) 133건, 1892년(고종29) 162건 등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보고되었다. 게다가 고종대 상언 및 격쟁의 원정에 대한 형조의 복계안 또한 저조한 기록율을 보였다. 『추조결옥록』에 기록된 상언·격쟁안의 경우 산송이나 입후 등의 내용 외에 90%이상을 차지한 것은 살육죄인의 冤抑을 호소하는 격쟁이다. 고종대 『추조결옥록』에는 심리 옥안과 마찬가지로 격쟁 원정이 1873년 이후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초기 서계류인 형조 및 각 관사의 계목과 전국의 방미방회계 문서가 시기적인 특성 없이 일정하게 기록된 것에 반해, 심리안, 격쟁안, 살육죄인의 녹계안 등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유승희,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서지학연구』46, 2010).

【표 4】『추조결옥록』 살옥심리안에 나타난 여성 관련 범죄인의 사망원인

사망원인 피해자의 수	刃 刺	毆 打	足 踢	手 擠	拳 觸	跨 (膝) 築	縛 傷	搦 扼	自 殺	膝 撞	미 상	합 계
여성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수	2	4	3	0	1	2	0	0	0	0	0	12
남성가해자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수	7	19	13	2	1	0	4	1	15	2	1	65
합계	9	23	16	2	2	2	4	1	15	2	1	77

【표 4】에 따르면, 여성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칼과 같은 도구에 의해 찔리거나 ‘구타’, ‘족척’ 등의 폭행에 의한 것이 많았다. 남성 가해자 또한 여성의 자살을 제외하고는 폭력에 의한 사망원인은 ‘구타’나 발로 차이는 ‘족척’이 많았다. 하지만 남성 가해자의 경우 여성가해자와 달리 여성을 묶은 후 상해를 입히는 ‘縛傷’이나 칼로 찌르는 ‘刃刺’, 무릎으로 치는 ‘膝撞’ 등 폭력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낫이나 칼 등의 刃物에 의한 폭력은 남성 및 여성가해자간에 많이 발생하였다.

폭력의 정도는 【표 5】를 참조할 수 있다. 【표 5】는 『추조결옥록』 살옥심리안에 나타난 여성 관련 범죄 77건 가운데 여성의 자살(15건)을 제외한 62건을 중심으로 폭력에 따른 여성 피해자들의 치사일수를 살펴본 것이다.

【표 5】『추조결옥록』 살옥심리안에 나타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치사일수

치사일수 행위주체	당일 치사	익일 치사	3일	4-5 일	6-7 일	8-9 일	10-11 일	12일 이상	미상	합계
여성가해자	2	1	1	2	1	3	0	0	2	12
남성가해자	28	7	3	2	3	2	1	2	2	50
합계	30	8	4	4	4	5	1	2	4	62

여성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일 치사한 사례는 2건이다. 반면, 남성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당일 치사한 경우는 28건으로 전체의 약 56%이며, 익일치사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한다. 또한 여성가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7건으로 58%의 비율을 보인데 반해, 남성가해자에 의한 경우는 86%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의 경우 남성의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 사례를 보면, 장흥의 홍소사는 채종효에게 가슴과 목을 구타당하고 발로 밟혀 그 날로 사망하였다. 두 사람은 치정관계의 남녀로 채종효는 홍소사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자하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¹⁰⁾ 안악의 최흥택은 이미 갇은 돈을 갚지 않았으며 채무를 독촉하다 방소사의 가슴을 발로 쳐서 즉사하게

10) 『秋曹決獄錄』 卷8, 壬子 4月 全羅前監司南秉哲啓本錄啓罪人二名 長興蔡宗孝獄; 『日省錄』 哲宗 8年 閏5月 19日.

하였으며,¹¹⁾ 강진의 김내찬은 조소사를 묶어놓고 구타를 하며 婚錢을 강제로 토색질하다가 조소사가 5일 만에 치사하였다.¹²⁾

특히 부부간 폭력의 경우 17건 가운데 당일치사가 12건으로 70%의 비율을 보였다. 영양의 김재특은 처 이소사를 구타하여 그 날로 죽게 하였는데, 목을 매어 죽은 것처럼 사건을 위장하였다.¹³⁾ 현풍의 김철이는 이유 없이 처 배소사를 밤중에 돌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¹⁴⁾ 친족이 형수 및 질부를 살해한 경우는 의도적인 살인이 대부분이어서 모든 여성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망하였다. 의령의 남치달은 3촌 질부 강씨를 목을 졸라 즉사시킨 후 물에 던져 익사한 것처럼 꾸몄으며,¹⁵⁾ 산청의 민이혁은 죽은 형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문중과 도모하여 형수 박씨를 구타하여 그 날로 죽게 하였다.¹⁶⁾

이처럼 남성 가해자들은 여성가해자와 달리 구타, 족적, 縛傷, 刀刺, 膝撞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의 정도는 당일 및 익일치사가 70%를 넘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남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세기 가족, 친족 간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정도가 다른 대인 범죄보다 심하여 가정 내 남성의 폭력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관련 범죄의 양상

1) 가정 내 범죄와 폭력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되었다. 『예기』에서는 여자는 10살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으며, 여스승은 상냥하게 말하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며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여성의 몸가짐에 대해서 가르친다. 여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삼과 모시로 길쌈을 하고 누에고치로 실을 뽑으며, 비단을 짜고 실을 만들어 남편과 가족에게 의복을 제공하는 한편, 제사에 참관하여 술, 초, 대나무, 제기, 침채, 젓갈을 올려서 제사하는 예를 돕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 내용은 가정생활에 한정되었다. 여성에게는 가족관계에 충실한 윤리와 규범이 수신의 바탕이었고,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범을 여성에게 내면화시키는 장치로 교육이 이루어졌다.¹⁷⁾

이처럼 조선시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은 자녀 양육 및 교육, 남편에 대한 내조, 시부모의 공양 및 보호, 가족문화의 계승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보호기능과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회화, 정서적인 안정 등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역할이었던 것이다. 가정 내 갈등은

11) 『秋曹決獄錄』卷8, 壬子 8月 黃海前監司徐載淳啓本錄啓罪人二名 安岳崔興宅獄.

12) 『秋曹決獄錄』卷6, 戊申 12月 康津金乃贊獄.

13) 『秋曹決獄錄』卷8, 壬子 6月 慶尙前監司李鼎臣啓本稟處罪人一名 英陽金在特獄.

14) 『秋曹決獄錄』卷8, 壬子 9月 慶尙前監司金大根啓本稟處罪人二名 玄風金哲伊獄.

15) 『秋曹決獄錄』卷8, 壬子 11月 慶尙前監司李紀淵啓本錄啓罪人一名 宜寧南致達獄; 『秋曹決獄錄』9, 癸丑 12月 宜寧南致達獄.

16) 『秋曹決獄錄』卷10, 甲寅 3月 慶尙監司曹錫雨啓本錄啓罪人一名 山淸閔爾赫獄.

17) 김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33~34면.

이러한 여성의 역할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였다. 부부간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문제 즉, 남성인 남편은 아내로서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 갈등을 폭력으로 표출하였다. 1826년(순조 26) 대구에서 발생한 변우선 옥사는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남편 변우선은 아내 문소사를 구타하여 그 날로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변우선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부인 문소사는 문지방에서 베개를 베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상중이었기 때문에 외당에는 두 명의 손님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변우선은 저녁을 먹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잠을 깨우며 부인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문소사가 남편을 부여잡고 욕을 하며 상복을 찢고 소란을 피웠으며, 변우선은 자신의 상복이 찢어진 것에 화가나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침으로 가격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시친인 문소사의 오빠 문일홍은 동생이 횡사한 것에 화가나 변우선과 주모 김소사가 사통해서 문소사를 구타해 죽였다고 고소하였다. 반면, 딸 변유익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움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악을 참지 못하고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고 계단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아버지가 외당으로 나가 손님들과 술을 먹고 함께 잤기 때문에 술 취한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격쟁하였다.¹⁸⁾

변우선 옥사의 경우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댁과 친정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였다. 자식은 어머니의 평소 불량하고 편벽된 행실과 성격을 지적한 반면, 문소사의 친정에서는 남편 변우선의 사통이 부인 살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시댁에서는 아내의 불성실한 태도를, 친정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지적하였다.

삼등의 이영화 또한 처 이소사를 구타하여 6일 만에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원인은 아내 이소사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남편의 분의 때문이었다. 부모가 사경을 헤매다 겨우 회생하여 식음을 청하자, 이영화는 아내에게 밥을 지을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아내 이소사가 말을 듣지 않고 털끝도 움직이지 않자, 화가나 부엌에 있는 칼을 휘두르며 이소사를 구타하였다.¹⁹⁾ 금구의 김준정은 노모가 곡식을 찢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기 민망하였는데, 처가 이웃집으로 길쌈하러 가자 화가나 흥두께로 수차 부인을 구타하였다.²⁰⁾ 이 경우는 부모에 대한 효행 때문에 발생한 남편의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아내에 대한 폭력의 심각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여성의 사망원인은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구타 때문이었다. 이때 피의자인 남편과 시댁에서는 평소 부인의 잘못된 행실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부인 살해의 정당성을 찾았다. 국가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부부관계는 강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부간 살해의 처벌을 일반 살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²¹⁾ 변우선 옥사의 경우 국가는 변우선이 문녀를 구타한 점, 폭행도구인 목침이 그대로 피가 묻은 옷과 버선에 두어진 점 등 사건의 맥락이나 詞證이 명확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18) 『秋曹決獄錄』 卷2, 庚寅 3月 大邱童女卞裕儀擊錚; 『日省錄』 純祖 26年 9月 20日; 純祖 28年 12月 29日.

19) 『秋曹決獄錄』 卷5, 乙巳 3月 三登童蒙李德化擊錚原情

20) 『秋曹決獄錄』 卷11, 乙卯 正月 全羅監司鄭基世啓本審理罪人四名, 金溝金俊丁獄事; 『日省錄』 哲宗 5年 3月 17日; 『日省錄』 哲宗 6年 1月 6日.

21) 『日省錄』 哲宗 6年 1月 6日.

만한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²²⁾

한편, 남편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처 뿐만 아니라 의를 끊은 악처를 쫓아가 구타하기도 하였으며,²³⁾ 처를 구타한 후 목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 경산에 사는 여수성 옥사는 처 정씨를 구타하여 즉사시킨 후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위장한 후 장사를 지내 관에서 掘檢을 한 사례이다. 여수성은 같은 현에 사는 정가의 여식과 결혼하여 4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평소 처를 내쫓는 등 남편의 구박이 심한 점으로 봐서 부부간의 정은 좋지 못하였던 같다. 무슨 연유로 부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건 당일 이미 부인이 문 밖으로 내쳐졌으며, 이후 남편에게 구타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²⁴⁾ 이 사건에 대해 여수성을 비롯한 시댁 형제들은 형수가 산후 광질로 밤중에 몰래 나가거나 말썽을 부려 형 여수성이 형수를 방에 가두고 열쇠로 잠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형수가 심하게 반항을 하였으며, 후에 방에서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보니 목매달아 죽었다고 격쟁을 하며 사건을 위장하였다.²⁵⁾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갈등은 부인의 음행에 대한 남편과 문중의 폭력으로 고조된다. 희천에 사는 김성덕은 처 방소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 또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하였다. 사건 당시 김성덕의 처 방소사는 이웃에 사는 이장백과 잠간한 사이였다. 김성덕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부인은 간부와 함께 방에 있었으며, 이에 김성덕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니 함께 죽자고 판단하고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 음부인 자신의 아내를 찔러 죽였다.²⁶⁾ 서울 살육죄인 양장성은 죽산 사람으로 서울로 상경한 이주자였다. 하지만, 처가 서울로 올라온 후 자주 음란한 행적을 드러내므로 양장성이 수치와 분함을 참지 못해 재산을 버리고 하향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이 반대하자 구타하여 다음날 죽게 하였다.²⁷⁾ 자인에 사는 사비 춘절은 간부와 몰래 도망가다 남편인 사노 잉복에게 잡혀 허벅지와 옆구리를 칼에 찔린 후 3일 만에 사망하였다.²⁸⁾

이처럼 부부간의 성문제나 아내로서의 역할 해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다. 조선시대 가정 내 성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은 가부장으로서 가정 내 대소사의 최종결정자였다. 따라서 아내보다 권위가 높았으며 여성이 전통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이에 반항하는 행동을 할 경우 폭력을 포함한 남편의 제재행위는 합리화될 수 있었다. 남성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으며,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폭력이라는 범죄행위가 표출되었다. 남편의 가부장적 역할이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나 가족에 대한 권위의식을 강화하였으며, 부부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적 가족관계의 갈등을 조성하였다.

22) 『秋曹決獄錄』 卷2, 庚寅 3月 大邱童女卞裕儀擊錚; 『日省錄』 純祖 26年 9月 20日.

23) 『秋曹決獄錄』 卷10, 甲寅 2月 長興 周甫治獄事.

24) 『日省錄』 哲宗 6年 1月 9日; 『日省錄』 哲宗 8年 閏5月 29日.

25) 『秋曹決獄錄』 卷10, 甲寅 8月 慶山童蒙呂彭壽擊錚原情.

26) 『秋曹決獄錄』 卷6, 戊申 12月 熙川李長伯獄. 『日省錄』 10월 21일.

27) 『秋曹決獄錄』 卷3, 甲午 9月 西部童蒙梁長顯擊錚原情.

28) 『秋曹決獄錄』 卷15, 己未 正月 慈仁私奴苐卜獄; 『日省錄』 哲宗 10年 1月 26日.

2) 성적 욕망사이에서의 갈등: 여성의 성과 범죄

여성관련 범죄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여성이 바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거나 희생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부는 이웃 동리에 사는 남성들에게 縛娶(보쌈)의 대상이었다. 함평에 사는 김상현은 같은 마을에 사는 과부 조씨를 보쌈하기 위해 집 창문으로 돌을 던지거나 몰래 점을 보자고 꼬드기기도 하였으며, 책이나 그림을 빌리는 척하며 조씨의 동태를 엿보았다.²⁹⁾ 명천에 사는 맹씨의 경우는 장기간 남편의 출타로 과부와 같은 상황이 되자, 이웃에 사는 현수가 이불에 싸서 보쌈을 하려다가 실패하였다.³⁰⁾ 남성들은 매파를 이용하여 그에게 뇌물을 주고 과부를 빈집으로 끌어 들여 보쌈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보쌈하려는 남성 1인만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동리안의 사람들이 모두 보았을 정도로 공개적이었다.³¹⁾

이처럼 여성의 행동은 가정, 이웃, 노동 공간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남성에게 의해 모니터링되었다. 그 가운데 과부는 주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표적이 되었으며, 가족 내의 감시와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 희생물이었다. 사대부 집안의 과부는 정절 이데올로기에 따라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외부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보호와 경계를 받음과 동시에 가족이나 타인의 감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때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 여성은 가족이나 문중에 의해 사적 처벌이 행해졌다.

특히 남편이 없는 淫婦에 대한 폭력 행사는 친족이 담당하였다. 이월에 사는 김종택은 최소사를 결박한 후 익사시켜 죽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상과부인 최소사가 실행한 후 改嫁하였기 때문이다. 최소사는 음란한 행실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났으며, 소박을 맞은 후에 다시 시집을 가자 문중에서 소박맞은 부녀의 재가를 은폐하고자 김종택을 사주하여 최소사를 살해하였다.³²⁾ 숙천의 김계진은 질부인 서소사를 구타하여 다음날 죽게 하였는데, 구타 이유는 질부의 간음 때문이었다.³³⁾ 의령의 남치달 또한 3촌 질부 강씨를 심야에 목을 졸라 즉사시켰으며,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신을 물에 던져 익사한 것처럼 위장하였다.³⁴⁾

조선후기 여성의 정절 행위는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족이나 남성의 보호가 요구되는 수동적인 순결이었다. 더욱이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적 유교 이념이 양인 이하의 여성에게까지 파급됨으로써 확장되었다. 그 결과 성리학적 유교 이념은 여성의 성적 활동에 따라 여성을 ‘미덕과 악’, ‘烈女와 淫婦’의 상반된 카테고리로 묶어 버렸다. 따라서 여성의 성통제가 강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리학적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음부’라는 낙인이 찍혔을 경우 자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경기도 영천에 사는 과부 박씨는 사대부의 부녀자로 孽族 김조술에게 3번 아이를 지우고

29) 『秋曹決獄錄』 卷5, 乙巳 6月 全羅監司金景善 啓本錄啓罪人二名 咸平金尙玄獄.

30) 『秋曹決獄錄』 卷5, 乙巳 3月 明川良女金召史擊錚原情.

31) 『秋曹決獄錄』 卷6, 戊申 4月 江陵幼學崔秉榮擊錚原情.

32) 『秋曹決獄錄』 卷8, 壬子 6月 咸鏡前監司朴永元啓本錄啓罪人一名 利原金宗宅獄.

33) 『秋曹決獄錄』 卷6, 戊申 12月 肅川金啓珍獄.

34) 『秋曹決獄錄』 卷8, 壬子 11月 慶尙前監司李紀淵啓本錄啓罪人一名 宜寧南致達獄; 『秋曹決獄錄』 卷9, 癸丑 12月 宜寧南致達獄事.

다시 임신했다는 추문을 받았다. 추문을 낸 김조술은 과부 박씨를 몰래 강간하고자 시아버지 민봉조가 출타한 틈을 타 박씨가 홀로 거처하는 방문을 두드렸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과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흉언을 꾸몄다. 사족 과부로서 이러한 욕설을 당하자, 박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官庭에 나가서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며칠을 관정에 와서 호소하는 데에도 소장에 대한 답이 없이 김조술의 刑治가 지연되자, 과부 박씨는 관문 밖에서 자살하였다.³⁵⁾ 황해도 배천에 사는 오증악은 김의종의 누이를 연모하여 매일 그녀를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김의종의 누이가 약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웃의 노파를 이용하여 자신과 김녀가 통간했다는 이야기를 꾸며 파혼당하게 하였다. 더욱이 오증악은 김의종 누이의 비녀를 훔치고, 차고 있던 노리개를 섬돌에 두어 潛通한 信物의 흔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김녀가 수치스럽고 분함을 참지 못해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³⁶⁾

이러한 추문으로 인한 여성의 자살은 어린 여자아이에게도 나타났다. 이대남의 여아는 양귀동이 자신과 사통한 사이라고 무고하자 스스로를 때려 9일 만에 치사하였다. 이 사건은 양귀동이 이대남의 여아와 勒婚할 계략으로 여아의 적삼을 훔쳐 추문의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에 어린 여아는 자신을 마구 때려 9일 만에 사망하였다.³⁷⁾

위의 사례들과 같이 추문, 겁간이라는 상황이 여성에게 불리한 이유는 여성의 성통제가 강화된 성리학적 정절 이데올로기에서 淫婦, 淫女는 바로 ‘악’의 상징이었으며, ‘도덕적 위험성’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미혼 여성은 실제와 다르게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추문만으로도 의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파혼을 당하였다.³⁸⁾ 따라서 여성은 자신이 사회의 ‘악’으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정절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추문을 받은 여인은 이러한 자신의 진실을 받아줄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자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여성은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은 깨끗하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살로 인해 그동안 추문을 통해 음부라고 낙인찍혔던 자신의 ‘악’은 정절을 지킨 ‘미덕’의 여성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의 성은 범죄와 자주 오버랩 되었다. 모성과 재생산에 의한 성의 역할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관련 범죄자를 양산하였다. 여성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남성들은 교묘하게 그 시대 여성들의 ‘도덕적 위험성’을 이용하였다. 남성들은 賢母, 良妻, 烈婦 등 그 시대의 여성상, 여성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에 악용하였다. 추문, 겁간 등의 상황이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여성의 도덕적 위험성을 이용한 사례이다. 자기가 소유하고픈, 또는 소유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복수로 음부라는 그 시대 여성들의

35) 『秋曹決獄錄』 卷1, 壬午 2月 京畿監司韓競履啓本; 『秋曹決獄錄』 卷1, 壬午 10月 榮川金祖述獄.

36) 『秋曹決獄錄』 卷2, 庚寅 3月 白川幼學吳運朝擊錚原情; 『秋曹決獄錄』 卷10, 甲寅 2月 白川吳曾樂獄事.

37) 『秋曹決獄錄』 卷9, 癸丑 9月 靈光梁貴同獄事.

38) 『秋曹決獄錄』 卷5, 乙巳 3月 平壤良女李召史擊錚原情.

‘도덕적 위험성’을 이용하였다. 즉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여성을 ‘도덕적 위험’이 높은 여자로 재탄생시켜 그 여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에는 자살하게 하였다. 성적 욕망사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여성의 자살로 해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3) 가정 밖 여성 폭력의 양상과 갈등

여성 폭력범죄는 그 대상이 남성과 여성 양성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은 남성과 여성 이성간, 여성과 여성 동성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행위는 弑夫사건으로 표출되었다. 시부사건은 모두 부인이 간부와 모의하여 남편을 살해한 淫獄이었다. 한성부 서부에 거주하는 박어인연은 병이든 남편 김철삼의 약에 비상을 넣어 살해하였다.³⁹⁾ 박어인연이 남편을 살해한 원인은 술을 먹고 구타하는 남편의 습관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한다다가 이웃의 조수영과 和姦하여 그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회양부에 사는 유어인연 또한 박어인연과 마찬가지로 술로 인한 남편의 폭력과 자신의 화간이 남편 살해의 원인이었다. 유어인연은 간부 송원철과 함께 남편 이성득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⁴⁰⁾ 회덕에 사는 허반철은 장명득의 처 김소사와 잠간하다가 본부인 장명득을 죽이고 물에 던졌다. 김소사가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본부를 죽이기 위해 간부와 계락을 짜 남편을 유인하여 살해하는데 중범의 역할을 하였다.⁴¹⁾ 영변의 송소사 또한 간부가 함께 공모하여 본부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시부죄인에 대해서 국가는 엄형주의를 내세웠다. 국가는 남편 살해도 부모를 살해한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시부죄인을 참형에 처하였을 뿐 아니라, 죄인이 거주한 읍의 읍호를 강등시키고, 거주하는 집은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었으며, 자식은 노비로 삼았다.⁴²⁾ 시부죄인의 경우 일반 살인사건의 심리에서 보이는 사건의 情狀, 형법상 용서할 점 등을 살펴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국가의 寬刑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부모를 살해한 弑父죄인과 마찬가지로 강상을 무너뜨린 弑逆을 적용하여 국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군현에까지 그 책임을 물게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간의 폭력이다. 여성간의 갈등은 집안의 사소한 물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청도 당진의 윤소사는 김소사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해자인 김소사는 집안의 재산인 소를 빼앗기자 이를 다시 찾으려 했고, 이것이 소용이 없자 소의 고삐와 재갈을 취해 가지고 가려는 과정에서 윤소사와 시비가 벌어져 사망하였다.⁴³⁾ 청도의 박소사는 이소사를 손으로 쳐서 15일 만에 치사하게 하였는데, 2전의 빚을 갚으라고 재촉한 것이 종국에는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⁴⁴⁾ 홍주의 윤소사는 김소사와 쌀을 이는 조리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김소

39) 『日省錄』純祖 20年 4月 29日 甲寅; 『日省錄』純祖 20年 5月 2日 丁巳.

40) 『日省錄』純祖 20年 5月 4日 己未; 『日省錄』純祖 20年 5月 5日 庚辰.

41) 『秋曹決獄錄』卷8 壬子 4月 忠淸前監司趙得林啓本稟啓罪人一名 懷德許半哲獄.

42) 박경, 「살육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夫妻 관계상」, 『여성과 역사』10, 한국여성사학회, 2009, 45~46면.

43) 『秋曹決獄錄』卷5, 乙巳 6月 忠淸監司姜時永啓本稟啓罪人一名 唐津吳召史獄.

44) 『秋曹決獄錄』卷16, 7月 慶尙監司金世均啓本稟啓罪人二名錄啓罪人一名 淸道朴召史獄.

사를 8일 만에 치사하게 하였다.⁴⁵⁾

아이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숙천의 김소사는 동네에 사는 박소사와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던 박소사의 아이를 던져 그 자리에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⁴⁶⁾ 익산의 오소사는 박소사의 신생아를 유괴하여 아이가 觸風致死하기도 하였다. 오소사는 낙태를 한 상태로 이웃의 노파로부터 신생아 오줌이 약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박소사의 신생아를 훔쳐 도망갔다. 하지만 사방에서 아이를 찾는 것에 당황하여 아이를 벚짚 속에 가려서 논밭에 던져두었다가 아이가 찬바람을 맞아 사망하였다.⁴⁷⁾

4. 여성범죄인의 처벌과 인식

1) 여성의 타인 살해에 대한 국가의 처벌

여성의 타인살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은 사형이었다. 하지만 여성이 타인을 살해했을 때 국가가 형률에 의거해 처단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살인과 같은 인명사건은 사증이 모두 갖추어지고 사망원인(實因)이 분명한 뒤에야 형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獄案에 의문점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최종 판결자인 국왕은 감형하라는 처벌을 내렸다. 이는 살육의 심리에 인명의 소중함과 옥사의 엄격성, 신중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⁸⁾

타인을 살해한 여성을 형법에 의거해서 사형에 처한 경우는 관비 효량이 정소사를 죽인 사례가 유일하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순 없지만, 정조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한 여인을 죽인 점, 살해 동기가 극히 사소한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문제 삼아 사형이라는 중죄를 선고하였다.⁴⁹⁾

반면 가해자인데도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석방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정열이 강조되어 처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1743년 황주 처녀 김자근연은 처음 김취흥에게 폐백을 받았지만 그녀의 부모가 취흥이가 처가 있으면서 또 처를 얻으려 한다면 퇴혼시켰다. 이에 화가 난 김취흥이 자근연을 겁간하려다 실패하자 자신과 이미 간통한 사이라고 추문을 퍼뜨렸다. 그러자 김자근연이는 분통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투신하였으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자, 복수할 뜻으로 남장으로 하고 김취흥의 집에 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이 사건에 대해 영조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문에 실려 있지만, 절개를 세운 자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군왕의 도리라고 하며 자근연을 석방하였다.⁵⁰⁾ 즉 국가는 실절했다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절벽에 투신한 김자근연의 행위를 중시 여겼던 것이다.

45) 『秋曹決獄錄』 卷8 壬子 6月 忠淸監司李根友啓本錄啓罪人一名 淸州洪召史獄事.

46) 『秋曹決獄錄』 卷6, 戊申 2月 肅川良女李召史擊錚原情; 『日省錄』 哲宗 5年 2月 30日.

47) 『秋曹決獄錄』 卷5, 乙巳 7月 全羅監司金景善啓本稟處罪人一名 益山吳召史獄; 『日省錄』 哲宗 4年 9月 12日.

48) 『審理錄』 卷11, 甲辰1 京 西部 朴再興獄.

49) 『日省錄』 正祖 8年 3月 19日 甲辰; 『審理錄』 卷10, 癸卯2 全羅道 寶城 鄭召史獄.

50) 『英祖實錄』 卷58, 英祖 19年 11月 23日 壬寅.

이러한 예는 전라도 강진의 김은애 옥사와 평안도의 최소사 옥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진의 김은애는 이웃의 안소사가 거짓말을 꾸며 모함을 한 것에 화가나 그녀를 살해했으며,⁵¹⁾ 최소사는 이삼치가 강간을 하려고 하자, 저항하다가 번철로 쳐서 7일 만에 죽게 하였다.⁵²⁾ 이 두 사례 모두 국가에서는 왕정의 급선무를 풍화로 보고 여인의 정절을 높이 여겨 가해자를 석방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성통제가 강화된 사회에서 김자근연, 김은애, 최소사 등 여성들이 성리학적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고자의 살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추문, 겁간이라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사였음에도 이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소극적 저항의 자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추문, 겁간자를 살해하는 적극적인 방식이었다. 국가 또한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살인을 행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왕도정치에 있어 급선무는 풍교를 세우는 것이다’⁵³⁾라는 이유로 석방이라는 관용을 베풀었다.

둘째, 처가 남편을 위해 살인을 행한 사건의 경우 국가에서는 婦德을 강조하며 석방하였다. 충청도 결성의 황조이 살육이 대표적이다. 이 옥사는 황소사의 딸이 석유일 처의 꼬임에 빠진 것을 보고 남편이 가서 싸우자, 인근의 고판금이 석유일 처의 편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난 황소사가 그를 이빨로 물어 7일 만에 죽게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왕은 아들이 아버지를 방어하는 것이나 처가 남편을 방어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았다. 더욱이 가해자인 황소사가 병자였고, 남편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남편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의 타당함을 강조하지 말고 석방할 것을 명령하였다.⁵⁴⁾

셋째, 실인과 사증이 명확히 구비되지 않은 疑獄일 경우 석방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조 7년 충청도 공주에 사는 주모 귀단은 딸과 함께 이웃의 이소사를 몽둥이로 구타하여 3일 만에 죽게 하였다. 싸움의 원인은 이소사의 남편인 신환이 귀단의 집에 자주 와서 술을 마시자 이소사가 간통한 사이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신환의 처가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심하게 구타한 후 오물을 입에 넣은 점, 간통했다고 제멋대로 의심하고 몽둥이로 번갈아 때린 점, 가해자가 구타한 상처가 죽을 만한 급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한 옥사로 규명하고 귀단을 석방하였다.⁵⁵⁾ 옥천의 김소사는 김수광과 간통한 사이로, 그의 아내 장소사를 질투한 나머지 발로 차서 3일 만에 죽게 하였다. 이 살육은 간통녀가 정처를 구타치사한 사건이지만, 국가는 실인이 명확하지 않고 詞證도 공정하지 못한 점, 여인이 발로 찬 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 사망한 장소사가 중병을 앓아온 점 등을 들어 엄형을 가한 다음 석방하였다.⁵⁶⁾

51) 『欽欽新書』 卷23, 祥刑追義11 情理之恕8.

52) 『日省錄』 正祖 11年 4月 16日 癸丑 ; 『審理錄』 卷18, 丁未2 平安道 龜城 崔召史獄.

53)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審理 獄案 崔召史獄.

54) 『日省錄』 正祖 14年 5月 12日 壬辰 ; 『審理錄』 卷21, 庚戌1 忠清道 結城 黃召史獄 ;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審理 獄案.

55) 『審理錄』 卷10, 癸卯2 忠清道 公州 貴丹獄 ; 『日省錄』 正祖 7年 6月 5日 乙丑.

56) 『審理錄』 卷14, 乙巳1 忠清道 沃川 金召史獄.

남성의 여성 살해 또한 여성의 타인 살해와 마찬가지로 의심스런 옥사일 경우 석방되거나 감형되어 정배형에 처하였다.⁵⁷⁾ 하지만 심한 경우 노비로 신분을 귀속하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함경도 북청의 이찬장은 김소사를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⁵⁸⁾ 이 사건에 대해 형조는 칼로 찔른 곳이 40여 군데가 넘었기 때문에 범행의 잔혹성을 문제 삼아 사형에 처하였다.⁵⁹⁾

경기도 여주의 강취문 옥사는 위궤치사죄로 노비로 귀속되는 형벌을 받은 사례이다. 이 사건은 강취문이 김씨의 딸 판련에게 억지로 장가를 들기 위해 이미 자기와 간통한 사이라고 모함하자, 판련이 간수를 마시고 그날로 자살한 경우이다. 국가에서는 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를 알고 그것을 지킨 판련에게 정려를 시행한 반면, 강취문에게는 판련이 사는 고을의 노비로 사역하라는 중벌을 내렸다.⁶⁰⁾

이처럼 타인 간 살해사건에 대한 범죄인의 심리과정에서 남녀의 성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시기 형법조율의 근거는 다음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형조의 회계를 보니, 반복하여 가벼운 죄를 부과하는 논의를 끌어대는 것이 분수를 너무 벗어났다. 참으로 이러하다면 여인으로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자는 모두 (남자와 여자는) 강약이 현격히 다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고 나면 뒷날의 폐단을 말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獄情으로 말하더라도 자신을 찔렀는지 남을 찔렀는지를 막론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칼을 찾아내었다는 것이 엄청난 패악의 행위인 즉 이처럼 흉악한 여자가 丈夫를 살해하는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하겠는가. …… 이러한 살육을 모두 가벼운 형벌로 처리한다면 국가의 법률은 앞으로 시행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다시금 道伯으로 하여금 직접 나서서 엄격히 檢覈한 다음 의견을 내어서 논리하여 啓聞토록 하라.”⁶¹⁾

위 사례는 1785년 이소사가 威姪 곽태석과 다투다가 얻어맞아서 자신의 목을 찔른다는 것이 실수로 곽태석을 찔러 14일 만에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부이다. 이 사건에 대해 형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숙질 사이라는 점, 남녀로 성별이 나뉜다는 점, 화가나 어두운 밤에 칼을 잘못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연한 변고라는 점을 내세워 형벌을 가볍게 하라고 주장하였다.

57) 『審理錄』 卷2, 己亥1 陽智 李龍才獄. 이용재는 고용인인 김소사가 화를 내는데 분이 나서 담뱃대로 때려 그 날로 죽게 하였다.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신문 한 곳뿐이고, 그 크기가 작은 점, 이용재가 의도적으로 세게 때린 것이 아니므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고용인과 주인의 명분이 있다는 점, 당시 사건의 상황이나 사리가 맞지 않는 점, 김소사의 死因이 이용재에 의한 구타가 아닌 피 흐르는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갔을 가능성, 술 취한 가운데 더위를 먹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이용재를 석방하였다.

58) 『審理錄』 卷1, 丙申 咸鏡道 北靑 李贊長獄.

59) 『日省錄』 正祖 卽位年 11月 22日 庚寅.

60) 『審理錄』 卷17, 丁未1 京畿 驪州 姜就文獄 ; 『日省錄』 正祖 11年 7月 30日 乙未.

61) 『審理錄』 卷14, 乙巳1 忠淸道 淸安 李召史獄, “觀此卿曹回啓 其反復援據傳輕之論 太過分數 審如是也 則女人之毆打人致死者 皆將以強弱之顯殊 置之不問乎 此路一開 後弊難言 雖以獄情言之 勿論自刎與刺人 入閨索刀何等絕悖之舉 則似此凶頑之女 能不辦戕殺丈夫乎…… 此等殺獄 舉皆從輕 則三尺之律 將無所施 更令道伯親執嚴覈 仍令出意見論理啓聞 爲旣”

하지만 정조는 이러한 형조의 견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즉 남녀의 힘의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칼로 남자를 찌를 수 없다는 형조의 의견에 정조는 여자가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힘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치는 것은 형률을 적용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반대의 의견을 내세웠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남녀의 논리에 따라 사건을 처벌하고 나면 이로 인한 뒷날의 폐단은 말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조의 견해는 형벌 적용에 있어 남녀의 인식 차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조는 이소사가 조카인 곽태석을 칼로 찌른 것에 대해 과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칼을 잡은 자세를 보면 자신을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닌 남을 찌르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소사의 완악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조는 형벌적용에 남녀의 차이는 물론 강자와 약자의 차이도 없음을 강조하였다.

판부 … 김용철에게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숙부가 있고 조카가 있고 집안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사형죄를 내리는 확실한 증거로 삼고 있음은 서울과 지방의 옥안에서 보지 못한 바이다. 전라도의 옥송 체통이 본시 이러하였던 것인지 알 길이 없구나.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정사를 壓良의 경우에 적용하거나 산송에 행하는 것은 옳겠지만,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기로에서 어떻게 강약을 논하겠느냐.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개입된다면 이는 바로 사사로운 뜻이 담긴 것으로 김용철을 죽일 수 없는 열 번째 이유이다. 경은 세 가지 의혹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세 가지 불분명한 점이 점점 더 의혹스러워지고 있다. 이 같은 살육은 의당 살려 주어야 할 것이니, 김용철을 엄히 한 차례 형문하고 정배하도록 하라.⁶²⁾

위 사례는 전라도 함평의 김용철 옥사에 대한 정조의 판부이다. 이 옥사는 김용철이 털이불을 잃어버리고는 임소사를 의심하고 구타해서 13일 만에 죽게 만든 사건이다.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사적인 합의를 하고 몰래 매장한 사건이지만, 9개월 뒤 피해자의 고소로 다시 옥송이 발생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정조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살인사건의 판결에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둘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정사는人命과 관계없는 압량이나 산송사건에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람의 사생을 결정하는 살육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살육을 최종 판결하는 국왕은 “법이란 천하가 평등한 것이다. 임금으로서 그 권병을 잡았다 하더라도 한 오라기의 터럭만큼이라도 사사로이 거기에 간섭할 수 없다”⁶³⁾며 법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남녀의 차이도 강자와 약자의 차이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의 공정성은 타인간의 처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남녀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살인옥사를 판결하는 법도는 먼저 본 옥사가 사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었지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분이 강자나 약자

62) 『審理錄』卷15, 乙巳2 全羅道 咸平 金龍哲獄, “以龍哲之有妻有子有叔有姪 家不貧 爲置辟之左契者 卽京外獄案之所未見 未知全羅道獄體 原自如許 是隱喻 抑強扶弱之政 用之於壓良 行之於山訟 固可 殺活關頭 奚論強弱 纔著這般意思 便已容私 龍哲不可殺者十也 卿曰三疑既晰。予則三昧轉惑 似此殺獄 宜付生道 龍哲身乙 嚴刑一次定配事分付”.

63) 『秋官志』, 第1編 律令 刑書 御定欽恤典則.

나, 천하나 귀하나의 구별은 오히려 주제 밖에 속한 문제였다.

타인 간 살해에서 범죄인의 조울 근거는 남녀의 성차를 떠나 고의살해의 여부, 실인의 명확함, 사증의 완비 등이었다. 옥안에 이러한 사실들이 정확히 구비되지 않는 살인죄수의 경우 석방이나 정배의 형으로 감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여성범죄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과 달리 풍교를 세울 수 있는 정절, 부덕을 행하기 위해 범한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적용되어 석방되었다.

2) 가정 내 여성 범죄의 처벌과 인식

가정 내 여성범죄로는 장모가 사위를 죽인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 경우, 첩이 처를 죽인 경우, 처의 남편 살해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부부관계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의 살해양상을 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는 대체로 감형의 형벌을 내렸다. 황해도 평산의 과부 최아지는 죽은 남편의 당질인 조광신과 몰래 간통하다 며느리 박소사에게 들키자, 며느리가 자신의 추한 소문을 퍼뜨릴까 겁이 나 간부인 조광신과 함께 그녀의 목을 조른 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⁶⁴⁾ 이 사건은 고부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일 뿐 아니라 양반 집안에서 淫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윤리를 손상시키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살육이었다. 게다가 몇 번의 검험을 통해 주범이 조광신과 최아지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추국과정에서 조광신이 죽었기 때문에 음육과 관련된 간부도 없고, 살육의 정범도 없는 상태의 疑獄이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최아지에게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덮어씌우는 것은 형벌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명률』 투구조의 “조부모, 부모가 非理하게 며느리, 손자며느리를 고의 살해한 경우 장100, 유2천리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아지를 정배형에 처하였다.⁶⁵⁾

시누와 동서, 처첩간의 불화가 살인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경상도 신령의 하소사는 시누인 김조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발을 가지고 서로 덩굴고 싸우다 김소사의 머리를 돌에 짓찧어 다음 날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는 김소사의 죽음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정배형에 처하였다.⁶⁶⁾ 전라도 영광의 임어인아지 옥사는 처첩간의 다툼 때문에 발생하였다. 임어인아지와 박소사는 모두 이항독의 처로, 임어인아지가 박소사의 여종을 빼앗으려 했으나 주질 않자 박소사를 발로 차 21일 만에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는 박소사가 80세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관문까지 갔으며, 保辜期限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구타로 인한 치사로 보지 않고 병사로 보아 임어인아지를 정배하도록 하였다.⁶⁷⁾

한편, 형벌을 적용하여 엄형한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 영흥의 윤소사는 오소사와 동서 사이인데, 오소사가 순종하지 않자 이를 꾸짖는 과정에서 부엌의 돌 있는 곳으로 떠밀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 그러자 윤소사는 오소사가 익사한 것처럼 가장해서 거짓 진술을 꾸몄으며,

64) 『審理錄』 卷15, 乙巳2 黃海道 平山 崔阿只獄.

65)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倫常 殺子婦.

66) 『審理錄』 卷15, 乙巳2 慶尙道 新寧 河召史獄.

67) 『審理錄』 卷8, 壬寅1 全羅道 靈光 林於仁惡只獄.

국가는 이러한 윤소사의 간사함과 악독한 태도에 형률에 따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⁶⁸⁾

그렇다면 가족 내 살인으로 가해자가 남자일 경우는 어떠했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자근덕을 호미로 찍어 죽인 최수동 옥사의 경우, 국가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구타치사 했을 시 감등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형하여 원배하였다.⁶⁹⁾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한 경우도 있다. 평안도의 황기종은 종질부 이소사가 돈을 빌려 주지 않자, 발로 차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죄를 받았다.⁷⁰⁾ 이 옥사에 대해 형조는 율문에 따라 교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명선 또한 親黨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이므로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인심이 갈수록 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국왕은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⁷¹⁾

이처럼 가족이나 친족 살해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타인 간 살해에서의 범죄인 심리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차를 떠나 공모 및 고의살해의 여부, 살인의 명확함, 사증의 완비 등에 따라 달랐다. 옥안에 이러한 사실들이 정확히 구비되지 않는 살인죄수의 경우 아무리 윤기를 무시한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정배형으로 감형하였으며, 실인과 사증이 구비되고, 공모 및 고의살해가 드러난 살육의 경우는 의법적용하거나 가형하기도 하였다.

夫妻관계의 시부죄인의 경우 일반 살인사건의 심리에서 보이는 사건의 情狀, 형법상 용서할 점 등을 살펴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국가의 寬刑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남편이 처를 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²⁾ 조선후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례를 보면 첫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부인을 살해한 경우이다. 이때 살해당한 처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본도에서 계하기를, “시어머니에게 입술을 뺨죽거리며 비웃고 욕을 하였으니 그 성품이 사납고 악독하다 하겠습니다. 직접 범행하여 처를 죽인 것은 孝義가 넘쳐서 그런 것이니 ‘제마음대로 죽인 죄과’로 돌리면 죄가 장100에 해당합니다.”하였다.⁷³⁾

라고 하여 남편이 처를 죽인 근본 원인을 효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석방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국가의 인식은 다음의 사례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판부 내에 “…… 처가 어머니에게 공손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그녀를 꾸짖어 타이르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사랑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물방아 소리에 잠을 깼다고 성을 내고 이웃집에서 보낸 떡을 던지고 먹지 아니하였다니 이렇게 패악한 성품은 진실로 바늘 도둑이 소

68) 『審理錄』 卷28, 丙辰2 咸鏡道 永興 尹召史獄.

69)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倫常; 『審理錄』 卷19, 己酉2 京畿 振威 崔守同獄.

70) 『審理錄』 卷3, 己亥2 平安道 江東 黃己宗獄.

71) 『日省錄』 正祖 3年 10月 20日 庚午. 속종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가증처벌된 경우도 있다. 양반 이 상담이 외손녀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그 예이다. 원칙적으로 외손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장 100 유2천리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첩이 동조하여 공모 살해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첩과 아울러 모두 부대시 교형에 처하였다(『肅宗實錄』 卷22, 肅宗 16年 12月 甲戌).

72)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倫常 殺妻.

73) 『審理錄』 卷8, 壬寅1 忠清道 忠州 李二金獄; 『秋官志』 第2編, 詳覆部 倫常 殺妻, 李二金 獄案.

도둑 될 근심[霜氷之憂]이 있는 것이다. 던진 흙덩어리에 맞고 부지깽이로 맞은 것도 그녀가 자초한 일이다. 설령 박여인이 이로 인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처를 살해하는 죄는 의심스런 것이니 진실로 어느 정도 참작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⁷⁴⁾

위 사료는 1787년(정조 11) 순천의 김삼남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처 박조이를 구타하여 치사케 한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부이다. 여기에서 정조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인의 패악함을 강조하며 남편의 행동을 옹호하였다. 게다가 정조는 여자가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일은 큰일이라고 간주한 반면, 남편이 처를 살해하는 경우는 의심스런 일이라고 구분 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위정자들이 삼강오륜을 死生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입술을 뺨죽거리며 비웃고 욕을 한’ 부인의 행동은 죽어도 될 만한 성품이 사납고 악독한 여자로 비유되었다. 국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인 살해에 대한 정당성을 평소 부인의 못된 행실에서 찾았다. 시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자 남편인 안광금에게 구타당하여 다음날 자살한 김소사 옥사의 경우도 형조의 입장은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형조는 남편이 처의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 이에 반항하는 여인의 행동은 ‘악행’으로 인식하였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남편이 순종하지 않은 처의 따귀를 때린 것은 ‘보통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 이에 화가 난 처가 목을 매달은 것은 ‘이리 같은 독한 성질’을 견디지 못해서였다고 하였다.

국왕 또한 “그의 처 김소사가 처음에 이미 시아버지에게 공손하지 않았고 지아비에게 순종하지 않더니 결국에 편협하고 좁은 성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목을 매는 짓을 저질렀다. 이러한 죽음이야말로 쓸데없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피살된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⁷⁵⁾라고 하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여인의 자살을 ‘쓸데없는 죽음’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부인의 간통에 따른 남편의 살인이다. 살인은 원칙적으로 사형의 형벌을 받았지만 간음으로 인한 것은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⁷⁶⁾ 이는 피해자인 남편이 간통한 남녀를 현장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간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남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권을 허용하고 있었다.⁷⁷⁾ 이러한 양상은 정조대 이후 더욱 확대되어, 간통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간부를 살해하거나,⁷⁸⁾ 간통 행위가 있는 지 9개월 후에 간부를 구타에서 살해한 남편에 대해서도 석방의 판결

74) 『審理錄』 卷17, 丁未1 全羅道 順天 金三男獄, “判....見其妻之不恭於其母 則誚責而警飭之可乎. 溺愛而不言可乎 愠水碓之撼眠 投隣餅而不食 似此勃鏝之性 誠有霜氷之憂 土塊之投 爐木之打 卽渠自取 設令朴女因此致命 順親事大 殺妻罪疑 固可有一分參恕之端.”

75) 『審理錄』 卷9 癸卯1 江原道 金城 安光金獄.

76) 이러한 규정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속대전』 살육조에는 ‘그의 母가 他人과 몰래 姦通하는 것을 아들이 姦通한 곳에서 姦夫를 찔러 죽이면 參酌하여 定配한다’고 하여 살인 사건이지만 간음으로 인하여 간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정배형에 처하고 있다.

77)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韓國史研究』121, 2003, 105~119쪽.

78) 『秋官志』 詳覆部 奸淫 因奸殺人.

을 내리고 있어,⁷⁹⁾ 간통한 남녀에 대한 사적 징벌을 용인하였다.

셋째, 남편의 습관적인 폭력에 의한 타살이나 자살이다. 범죄에 나타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심리적이거나 간접적인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고 있었다. 밥상으로 처를 때려 머리가 부러지거나⁸⁰⁾, 머리를 휘어잡고 구타하여 목이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불로 부인을 단근질하기도 하였다.⁸¹⁾ 이러한 부부간의 폭력에 대해 국가에서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에 대한 지배 행위를 합법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남편의 폭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국가는 오히려 남편들의 이러한 폭력성을 그다지 나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남편의 폭력에 의해 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는 “정상으로 말하면 귀밑머리 마주 풀고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 꼭 죽여야 할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고의 살해의 확증이 없는 이상 시친의 증언만 가지고 상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殺妻 행위를 용서하고 있다.⁸²⁾ 특히孝의 요소가 들어가면 더욱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효의 관점 하에서 피해자인 여자는 악녀로 변질된다. 가정 내에서는 남성 욕망 중심적이거나 가부장적 질서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각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편의 살처 행위에 대해 국가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관점과 망자인 부인이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가) 부부사이의 희롱을 하다가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또 죽는다면 죄가 없는 자는 아들딸인 것이다. 하물며 범인의 목숨으로 보상함은 죽은 자의 원통함을 위로하려 함인데 죽은 자가 그의 아내이니 만일 죽은 자에게 지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남편이 살아서 나가는 것을 가만히 다행스레 여길 것이며 어찌 법대로 집행하여 사형시킴을 달가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아내의 죽음에 그 남편을 목숨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사건은 언제나 선뜻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이다.⁸³⁾

나) 지아비가 처를 살해하면 목숨으로 갚도록 하는 것은 법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상이 너무나 패악한 것이 아니면 이전에는 처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도 법대로 처리한 경우가 없다. 그것은 지아비가 처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 망자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⁸⁴⁾

위의 사례에 따르면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이었다. 당시 위정자들은 남편의 살처 행위에 있어 가장 불쌍한 자는 자녀들이며, 이들 때문에 살해당한 부인이 남편의 사형선고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 형사재판에도 적용되어 정조 자신 또한 처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79) 『正祖實錄』卷38, 正祖 17年 11月 甲寅.

80) 『審理錄』卷6, 辛丑3 全羅道 臨陂 石奉伊獄.: 『秋官志』第2編 詳覆部 倫常 殺妻.

81) 『審理錄』卷17, 丁未1 慶尙道 固城 馬太朋獄.

82) 『秋官志』第2編 詳覆部 倫常 殺妻 李君彬 獄案.

83) 『欽欽新書』卷25, 祥刑追議13 伉儷之戕8.

84) 『秋官志』第2編 詳覆部 倫常 殺妻 金三男 獄案: 『審理錄』卷17, 丁未1 全羅道 順天 金三男獄, “判. 夫殺妻償命在法 雖然除非情理絕悖 則前此殺妻之案 未曾一例置法 蓋夫因妻死 未必慰亡者之心故耳.”

사형에 처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살해에서 살처의 경우는 情狀과 형법상 용서할 점이 있으면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 가벼운 쪽으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인식의 바탕에는 사망한 부인이 남편의 감형을 원한다는 ‘婦德’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처로서 지아비를 위하는 마음은 생전이나 사후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살처한 남편에 대한 국가의 일관된 입장은 여성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도리를 우선해 살처 행위를 한 남편을 용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의 남편 살해에서는 이러한 용서할 점이 한 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 부처관계에서는 이유 있는 남성의 범행과 이유가 필요 없는 여성의 범행이라는 성적인 편견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

이 글은 조선사회의 고유한 젠더 질서의 특질을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형사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관련 범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은 조선시대의 젠더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텍스트들이었다. 특히 형사법에서 보면 조선시대 젠더 질서에는 명확한 이중성이 존재하였다. 그 이중성은 사회(가정 밖)와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성립되었다.

사회 안에서의 살상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차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노비나 고공이 주인을 살해한 主殺의 경우 살해된 주인의 성차는 형벌 적용에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살해범인의 성차 또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행위자인 노비나 고공의 신분이 형법상의 차등을 유발했을 뿐 남녀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형벌이 적용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양반에서 양인, 천민에 이르는 다양한 신분, 계층의 여성을 모두 남성과는 다른 논리로 차별화하여 재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여성을 주체성이 취약한 존재로서, 또한 보호해야하는 연약한 성으로서 흡수하지도 않았다. 즉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범죄의 경우 국가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화하여 보호하고 책임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평등한 조건에서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형벌을 집행하는 원칙은 ‘법이란 천하가 평등한 것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사람을 살해한 자를 ‘賞命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남녀에 상관없이 ‘국법을 적용한다’는 인식과 함께 ‘죽은 자를 위해 원수를 갚는다’는 이중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형사법의 측면에서 가정 밖의 젠더 질서에는 남녀 간의 동등성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차가 문제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도 부처관계를 떠난 형제, 친속관계에 있어서는 형률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과정에 있어도 복상관계에 따른 친속의 친소관계와 존장과 비유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되어 있을 뿐, 남녀의 성차에 따른 형사법상의 불평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처관계에서만 형률이나 실제 재판과정에서의 성차가 형사법상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

부부간 폭력에 대해 국가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에 대한 지배행위를 합법화,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부처 간 살해에서 남편의 부인 살해의 경우, 사건의 정황과 형법상 용서할 점이 있으면 국가는 기꺼이 형량을 감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사망한 부인이 남편의 감형을 원한다는 ‘婦德’과 남편의 살처 행위의 ‘우발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일관된 입장은 살처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사망한 부인에게 어머니, 아내로서의 도리를 우선시 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성의 지아비 살해에서는 이러한 용서할 점이 한 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부관계는 강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부인의 남편 살해의 처벌을 일반 살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 부처 간 범죄에서는 당위성이 있는, 이유 있는 남성의 범행과 변명이나 이유가 필요 없는 여성의 범행이라는 성적인 편견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남성이나 여성이나는 젠더의 논리보다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유교적 의리관계를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차별이 유도된 것이었다.